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60

202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안광석 의원(찬성자 10명)
나. 발의일자 : 2020년 11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30일
라. 상정결과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광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에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게 지방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지방문화원의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항)
○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지방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 지방문화원 타 문화원 등과의 협력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분원설치 신청 서식에 대해 규정함(안 별지서식 제1호~제4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 설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정의 필요성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설립인가 절차 및 조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동법 제4조제10항[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1.1.1.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시설기준 조항 등을 포함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장[2] '문화원의 육

---

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2) 제35조(문화원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문화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력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
2. 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36조(문화원의 기능과 사업) 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성’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문화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이 표준안에 맞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문화원 설립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지방문화원은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문화원연합회’를 포함하여 총 26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으로 인한 실효성은 설립보다는 지방문화원 운영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21년 예산(안)에는 지방문화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3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설립인가 신청, 시설 기준, 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등 총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2.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 사업에 한한다.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2조	정의	제8조	분원의 설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9조	보조금 지원 등
제4조	설립인가 신청	제10조	지도 및 감독
제5조	시설 기준	제11조	협력 지원
제6조	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부칙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21.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문화원법」 제3조의2[3]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

3)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보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2011년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계획 수립 주체의 구체성의 결여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활성화 중장기계획(2013~2017)' 외에는 기본 계획이 수립된 예가 없는 실정으로[4],

기본계획 수립·추진의 주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정안과 같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이 수립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지방문화원진흥법」 내 위임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8조)

○ 안 제4조는 설립인가 신청, 안 제5조는 시설 기준, 안 제6조는 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안 제7조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안 제8조는 분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 「지방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6.

이는 「지방문화원법」 제4조[5]에서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기준, 분원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의 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8조 분원의 설치는 기존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둘 수 있게 하던 것을 분원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자체의 주민복리 사무와 국가의 위탁사업 등으로 재정 수요를 수반하고, 매년 예산의 증액이

---

5)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요구되는 바, 서울시는 분원 설치인가시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의 조정, 운영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 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 설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혼선과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의 문화자치권 강화와 시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임.

붙 임

자치구 지방문화원 현황

문화원명	원 장	사 무 국 장	설립일	시설현황 (연면적)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서울시 문화원 연합회	박삼규	조성삼	'96.09.20	196.13㎡	종로구 난계로 255 (대경빌딩 1006호)	2233-9084	
종로	최창혁	이동준	'94.12.22	247㎡	종로구 율곡로 5(단독원사)	2148-4087	
중구	김경수 (직무대행)	김동주	'95. 8.17	383㎡	중구 청계천로 86(한화빌딩 1층)	775-3001	
용산	박삼규	최규해	'97.12.12	1,286㎡	용산구 원효로 효창원로 8길 28	703-0052	
성동	김종태	양채용	'97.10.21	127㎡ (608.25㎡)	성동구 왕십리로281(성동문화회관 2층)	2286-6234	( )안은 임대사용
광진	양회종	김용권	'96.11.11	2280.82㎡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67	447-0244	
동대문	윤종일	강임원	'98.12.28	561㎡	동대문구 왕산로 128 (동의보감타워 지하2층)	2241-9300	
중랑	김태웅	이동열	'98. 9.26	570.76㎡	중랑구 면목로 238, 중랑구민회관 3층	492-0066	
성북	조태권	강성봉	'96.12.30	450.75㎡	성북구 성북로 4길 13-8(단독원사)	765-1611	
강북	임경자	오중섭	'96.12.12	347.57㎡	강북구 삼각산로 85(수유동) 강북문화예술회관 본관 3층	999-8109	
도봉	이영철	최영근	'94. 8.20	753㎡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3층)	905-4026	
노원	박춘택	김인정	'97.12. 9	1,686㎡	노원구 동일로 197길 24(단독원사)	6380-0022	
은평	김명자	정영숙	'98.11. 5	131.70㎡	은평구 녹번로 16(문화예술회관 2층)	383-9300	
서대문	신현준	이화영	'01.10.26	342㎡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3217-1592	
마포	최병길	김춘배	'97. 9.30	1,236㎡	마포구 백범로 227(단독원사)	312-1100	
양천	이지태	전광수	'97. 2.28	2,109.05㎡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별관5층)	2651-5300	
강서	김진호	육춘수	'95. 5.23	2,046.45㎡	강서구 화곡로 215(단독원사)	2607-4233	
구로	최문식	유영직	'05. 3. 10	1062.73㎡	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 2층,5층)	851-0837	
금천	손정기	홍혜봉	'99. 6.22	2,025.2㎡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1	896-8553	
영등포	한천희	이용욱	'99. 8. 7	3,804㎡	영등포구 신길로 275(단독원사)	846-0155	
동작	송지현	김종순	'98.12.21	1,145㎡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문화복지센터 3층)	822-8500	
관악	진진형	김종근	'92. 2.28	200㎡	관악구 신림로 3길 35 (관악아트홀 1층)	885-5975	
서초	박기현	이용수	'09. 3.17	429㎡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2155-8609	
강남	박양재	최정만	'98. 4.14	563.89㎡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역삼푸른솔도서관 3층)	3454-1517	
송파	정병구	류승보	'94. 9. 7	2,235㎡	송파구 올림픽로 44(단독원사)	414-0354	
강동	양재곤	오해윤	'99. 1.29	212.69㎡	강동구 상암로 168 (강동구민회관 2층)	3425-6994	

붙 임 **집행부 검토 의견**

의안번호 2060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안광석 의원	2020.11.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해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 (안 제5조) - 지방문화원의 시설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해 규정 (안 제6조) -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 (안 제8조) - 지방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 (안 제9조) -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타 문화원과의 협력지원에 대해 규정 (안 제10조)		
추진경과	○ 2020.11.13. 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 부결 ( ) / 보류 (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동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지방문화원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건전하게 지방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함		
대응방안	○ 별도 대응내용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함영우(☎2133-2559)	담당 손해영(☎2133-256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광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60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13일

발 의 자 : 안광석 의원(1명)

찬 성 자 : 노승재, 최영주, 황규복, 김춘례, 김태호, 경만선, 오한아, 유 용, 신원철 김소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에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 분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게 지방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지방문화원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지방문화원의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승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항)

바. 지방문화원의 분원 설립인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항)

사. 지방문화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자. 지방문화원 타 문화원 등과의 협력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차.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분원설치 신청 서식에 대해 규정함(안 별지서식 제1호~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서울특별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

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문화원과의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장(제35조 및 제36조)을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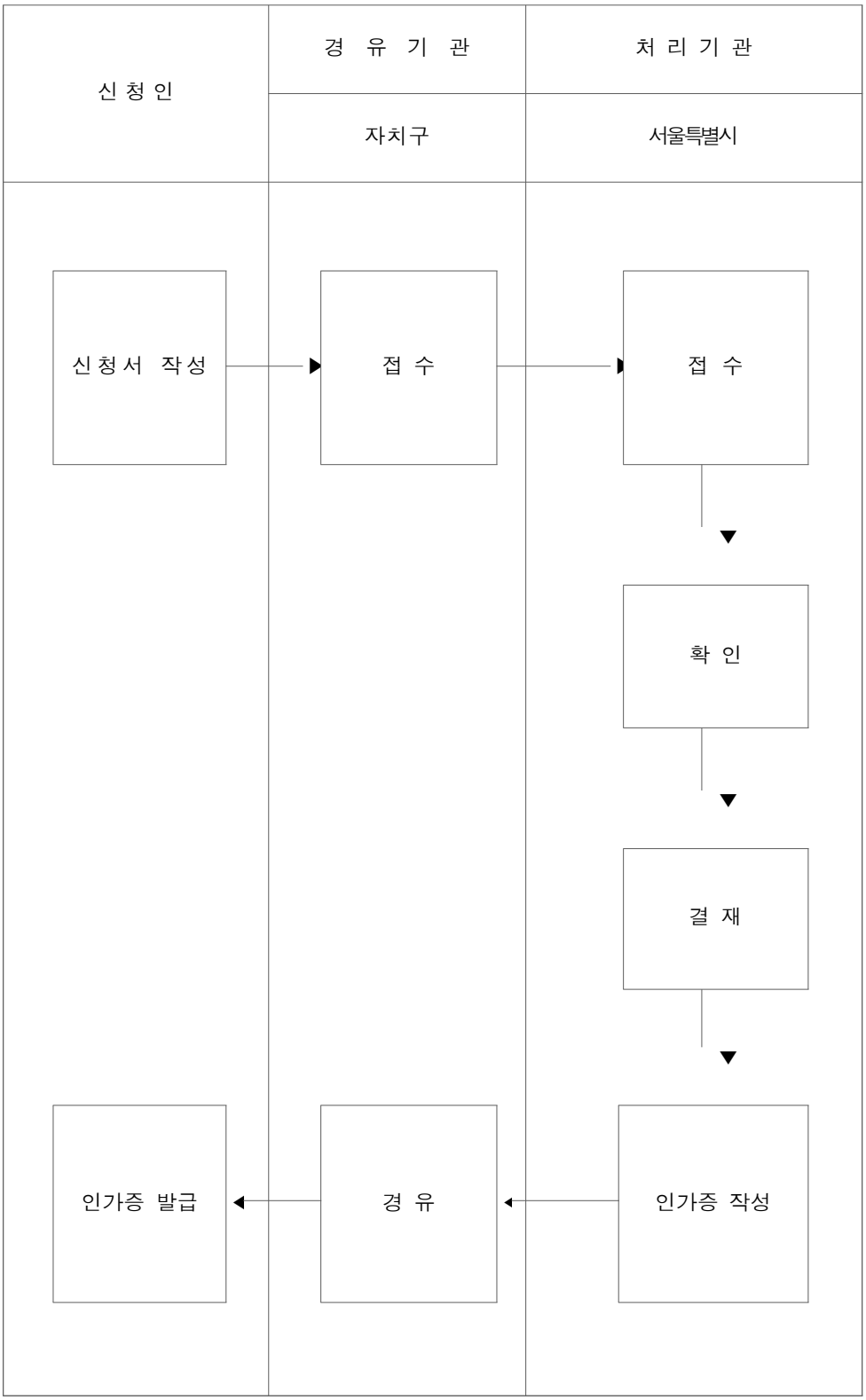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1.1.1>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원		대표자 성명
		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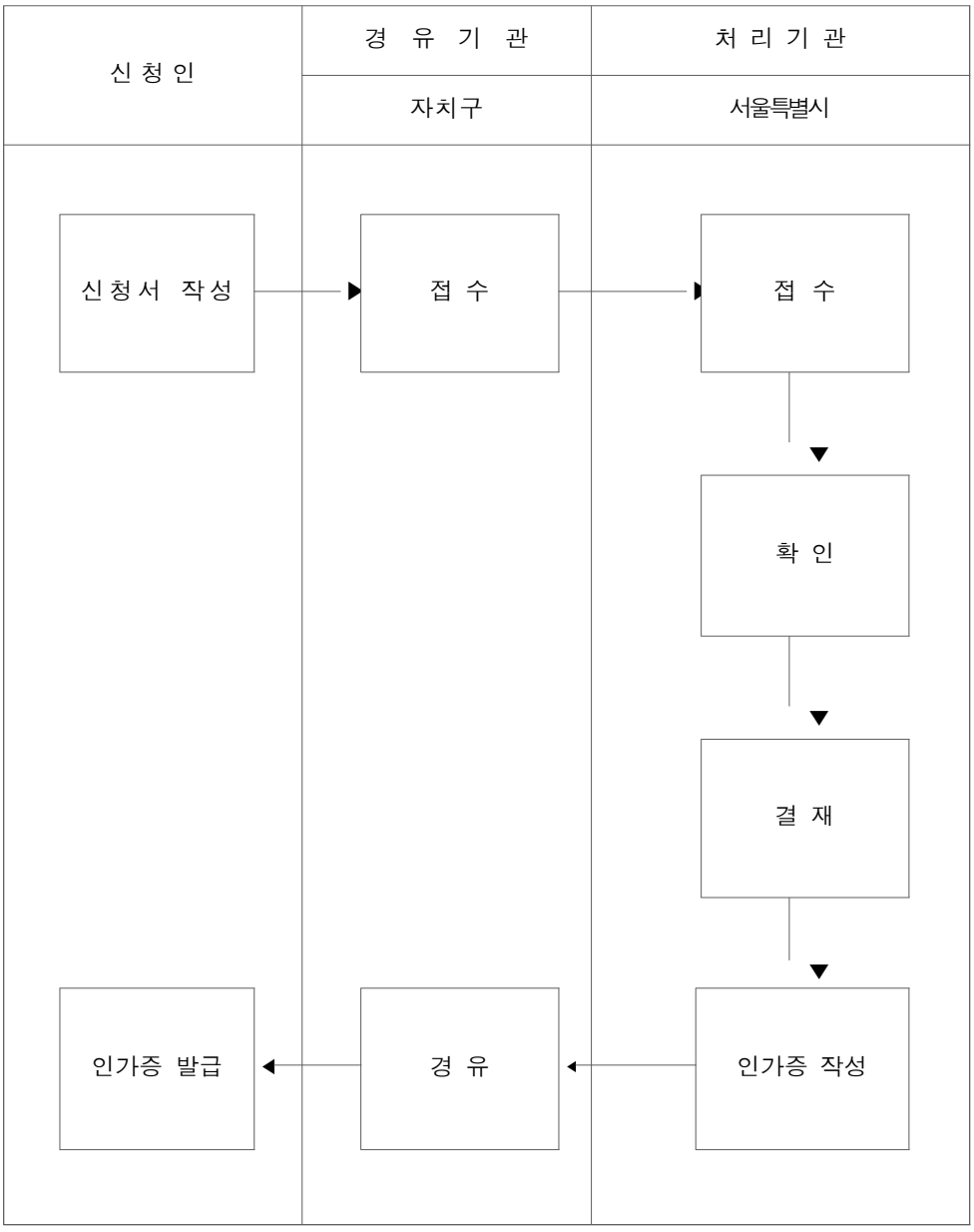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1.1.1>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본원	
분원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